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48 호 2022. 6. 16.(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33호[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34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6호선(2구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35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36호[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3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811호[2022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825호[행정대집행 계고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826호[공시송달 공고] 1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33호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38	노외주차장	북구 중산동 687번지 일원	-	증 1,954	1,954	'20.12.24. 울(북)고245호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38	노외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변경(감 52m²) - A=1,954m²→1,90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이화마을 주차장)사업
- 2) 명 칭: 이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나.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87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주차장 조성(68면, A=1,902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2)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마. 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명세서와 같음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계 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6호선(2구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6호선(2구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6호선(2구간))사업

나. 명 칭: 무지개아파트 일원(소로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2구간)

2. 위 치: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326-1번지 일원

3. 사업개요: 도로개설 L = 153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 당 초 : 2020. 3. ~ 2021. 3.

└ 변 경 : 2020. 3. ~ 2024. 3.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052-241-7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8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8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9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84호선)사업
 - 나. 명 칭 : 신천동 소2-84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L=82.0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 ┌ 당 초 : 2020. 6. 18. ~ 2022. 6. 18.
 - └ 변 경 : 2020. 6. 18. ~ 2024. 6. 18.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052-241-7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36호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복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당사금천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0	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480번지 일원	179,340	-	179,340	'03.12.31 울고218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9,340	-	179,340	100.0	'05.3.24 울고106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480	-	160,480	89.5	
자연녹지지역	18,860	-	18,860	10.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94	소2-48	소2-48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82	대3-43	소3-57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609	7~8	국지 도로	72	중2-17	당사동 250-1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3.24 울고106호	'13.7.25 울(북)고24호
기정	소로	3	52	6	국지 도로	108	중2-17	당사동 750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4	6	국지 도로	66	중2-17	당사동 250-1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5	6	국지 도로	58	소3-57	당사동 536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6	6	국지 도로	152	소3-55	소3-57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7	6	국지 도로	372	중2-17	소2-48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277	7~10	국지 도로	4,795	당사동 527-5	중1-90	일반 도로		'00.3.10. 울고33호	'20.6.4. 울(북)고94호

주)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나)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968	감) 270	10,698		
기정	205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321-3번지 일원	6,798	-	6,798	'05.3.24 울고106호	'21.12.23 울(북)고302호
변경	206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396번지 일원	2,475	감) 270	2,205	'05.3.24 울고106호	'12.11.29 울(북)고176호
기정	207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484번지 일원	845	-	845	'05.3.24 울고106호	'12.11.29 울(북)고176호
기정	208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509번지 일원	430	-	430	'05.3.24 울고106호	
기정	209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519-1번지 일원	290	-	290	'05.3.24 울고106호	
기정	210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538번지 일원	130	-	130	'05.3.24 울고106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6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축소 - A=2,475 → 2,205m²(감 27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획지)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대상	개발(획지)규모(m ²)	적용예외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 2,000m ² 이하 (단, 대상건별 개발(획지)규모 1,000m ² 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 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 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2. 지당대리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6	지당대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12번지 일원	61,149	-	61,149	'13.9.12 울고200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149	-	61,149	100.0	'13.9.12 울고200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56,613	-	56,613	92.6	
자연녹지지역	4,536	-	4,536	7.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3	35~55	주간선 도로	27,647 (68)	대1-1 (온산공단)	북구 중산동시계	일반 도로	태화강 (산업로)	'94.3.3 경고43호	'20.7.1 울고196호
기정	대로	2	68	30.5	보조 간선 도로	223 (128)	광3-3	울산송정 지구계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9.11.19 울고373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1	33	10	국지 도로	200	광3-3	1호철도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194	6	국지 도로	153	중3-98	대2-68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195	6	국지 도로	42	광3-3	소3-194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196	6	국지 도로	85	대2-68	소1-33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9.11.19 울고373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197	6	국지 도로	298	광3-3	소1-33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198	6	국지 도로	74	소3-197	소3-199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199	6	국지 도로	206	소1-33	소3-197	일반 도로	지당대리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주)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동해남부선)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북구 명촌동	시전역 (명동마을)	27,079 (130)	804,283.6 (2,670)	'70.3.30 건고152호	'21.12.24 국고1361호

주) ()는 구역내 철도 연장, 면적임

나)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8	녹지	완충 녹지	북구 송정동 799-4 일대	1,142	감) 99	1,043	'05.3.24 울고106호	'09.11.19 울고373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8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축소 - A=1,142 → 1,043m²(감 9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획지)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대상	개발(획지)규모(m ²)	적용예외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 2,000m ² 이하 (단, 대상건별 개발(획지)규모 1,000m ² 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 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 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3. 복성제전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8	복성제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117번지 일원	136,910	-	136,910	'03.12.31 울고218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6,910	-	136,910	100.0	'05.3.24 울고106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97,760	-	97,760	71.4	
자연녹지지역	39,150	-	39,150	28.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84	8	국지 도로	241	중1-90	중1-90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18.9.6 울(북)고220호
기정	소로	2	385	8	국지 도로	52	중1-90	소2-384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386	8	국지 도로	102	중2-17	구유동 642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387	8	국지 도로	306	중2-17	소3-45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388	8	국지 도로	46	중2-17	소2-387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389	8	국지 도로	164	중2-17	중2-17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390	8	국지 도로	196	중2-17	중2-17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650	8	집산 도로	995 (244)	중2-17	중1-90	일반 도로		'98.5.11 울고82호	'20.7.1 울고193호

주)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 표 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5	6	국지 도로	156	중2-17	구유동 111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12.2.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46	6	국지 도로	156	중2-17	소2-387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3.24 울고106호	'13.1.24 울고17호
기정	소로	3	277	7~10	국지 도로	4,795	당사동 527-5	중1-90	일반 도로		'00.3.10. 울고33호	'20.6.4. 울(북)고94호

주)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나) 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4	공원	근린 공원	북구 구유동 27-1번지 일원	11,460	-	11,460	'05.3.24 울고106호	'09.4.9 울고125호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570	감) 811	8,759		
기정	239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212-9번지 일원	3,160	-	3,160	'05.3.24 울고106호	
변경	240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산65번지 일원	3,770	감) 105	3,665	'05.3.24 울고106호	
변경	241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135번지 일원	1,650	감) 706	944	'05.3.24 울고106호	
기정	242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92-1번지 일원	990	-	990	'05.3.24 울고106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0	경관녹지	• 녹지축소 - A=3,770 → 3,665m ² (감 105m ²)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241	경관녹지	• 녹지축소 - A=1,650 → 944m ² (감 706m ²)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획지)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대상	개발(획지)규모(m ²)	적용예외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 2,000m ² 이하 (단, 대상건별 개발(획지)규모 1,000m ² 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 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 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2. 관계도면: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3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번영로 648	진장동 236-16	2022. 6. 16.	건축물 멸실
효죽4길 19	효문동 761-8	2022. 6. 16.	건축물 멸실
농서로 270	달천동 108-2	2022. 6. 16.	건축물 멸실
농서로 272	달천동 108-1	2022. 6. 16.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6.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811호

2022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 공고

2022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 업 명 : 2022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2. 사업내용 :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숲 관리 강화를 위한 숲가꾸기
3. 사업기간 : 2022. 6 ~ 7월 중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22. 6. 10. ~ 7. 9.(30일간)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 신청
 -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행추진
7. 기타사항 : 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대상지 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82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2년 5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658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적치물을 2022년 5월 27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2년 6월 27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하천법」 제73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화봉동1183-2번지	불법 적치물 (텐트)	4㎡	불법 적치물 철거

2022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8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금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6. 16. ~ 2022. 6. 30.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40-148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12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6. 30.(목)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